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23 선고 2020나220042(본소), 2021나204771(반소) 판결 [수로철거
등 청구의 소 · 소유권이전등기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

담당변호사 김건우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한국농어촌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3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8가단123154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)는 당진시 B 임야 7,835㎡ 중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D용수간선 토출관 10㎡ 및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계단 11㎡ 및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E용수간선 토출수조 95㎡ 및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D용수간선 토출수조 82㎡ 및 같은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지중 암거(D용수관) 및 C 임야 1,595㎡의 지하에 매설된 지중 암거(D용수관)를 각 철거하고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21,653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019. 7. 31.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,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당진시 B 임야 7,835㎡ 중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D용수간선 토출관 10㎡ 및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계단 11㎡ 및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E용수간선 토출수조 95㎡ 및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D용수간선 토출수조 82㎡에 관하여 2013. 11. 1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본소의 판단

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,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, 부당이득의 기산점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. 7. 27.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이 사건 소제일인 2018. 7. 27.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. 7. 28.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반소의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1993. 10.경 반소청구취지 기재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3. 11. 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을 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시설물 중의 일부인 반소청구취지 기재 시설물은 국가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국가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 것으로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, 피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의 규정 및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다가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철거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7. 12. 20.에 이 사건 시설물 철거는 불가하나 이 사건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, 2018. 1. 18.에도 이 사건 시설 부지의 매입을 검토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점을 종합하면, 피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, 판사 박이규